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제2026-52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외의 결정 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3항(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3. 공고기간 : 2026. 10. 16. ~ 11. 30.
4. 공고내용

사건번호		2026 - 778		
변경신청인	성 명	이○○	생년월일	1993. *. *.
	주 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88번길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결정주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청구를 기각한다.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		
결정일자		2026. 8. 25.		
변경 결정 외의 결정 (각하, 기각 등) 사유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그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변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변경 결정 외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또는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6.

용인시 상하동장